

#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05~
----------	-------

발의일자	2005. 5. .
발 의 자	신전규의원 외 4인

## ■ 제안 이유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의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중증 장애인이나 상이군경 등은 노동력의 상실로 자체 소득이 불가능하여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더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데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어 안타까운 실정으로,
- 군민이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명절이나 기념일 등에 저소득 주민과 국가 유공자 등을 위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국가 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을 그 대상으로 함(안 제2조).
- 나. 지원내용은 긴급구호비, 월동 대책비, 위문품, 학자금, 교육관련 경비 등으로 함(안 제3조).
- 다. 지원대상자는 교육관련 지원금은 교육장이,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장의 추천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고 그 외는 군수가 선정함(안 제 4조).

## ■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 나. 예산 조치 : 추경 예산에 반영
- 다. 관계부서 사전 협의 : 따로 붙임
- 라.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 마. 규제신설. 강화여부 : 해당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군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군민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보훈 대상자 등 저소득 국가유공자
3.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동 시설 이용자
4.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구호비 지원
2. 월동 대책비 지원
3. 위문금 및 위문품의 지원
4.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5. 학자금 등 교육관련 경비 지원
6.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군수가 결정한다.

1. 제3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는 군수가 선정한 자
2. 제3조 제4호, 제5호는 경상남도 거창군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자
3. 국가유공자는 경상남도진주보훈지청장이 추천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6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